

#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정) 2021.07.09 조례 제17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자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3.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마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제6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등)** ①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10조의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농민기본소득위원회)** ① 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 읍·면·동, 시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리에는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이하 “마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읍·면·동에는 농민기본소득 읍면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마을위원회)** ① 마을위원회는 마을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마을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리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리를 관할하는 마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마을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추천과 관리 등을 담당한다.
- ④ 마을위원회에서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읍면동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지급대상자를 추천한다.

**제9조(읍면동위원회)** ① 읍면동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장·면장·동장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읍면동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은 농민기본소득 동위원회가 마을위원회 역할을 병행한다.

④ 읍면동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심사와 마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⑤ 읍면동위원회는 마을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시위원회의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 중 공무원 및 파주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⑤ 시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급신청)**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간 협력)**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 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민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